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정일	2010. 3. 1
개정일	2023. 9. 1
개정차수	3차
담당부서	연구지원센터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교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와 직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 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9. 1)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신설 2023. 9. 1)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3. 9. 1)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3. 9. 1)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3. 9. 1)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9. 1)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신설 2023. 9. 1)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3. 9. 1)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신설 2023. 9. 1)

설 2023. 9. 1)

5. “부당한 중복계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 9. 1)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 9. 1)
 7.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 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1.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신설 2023. 9. 1)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설 2023. 9. 1)
 3. 제보자가 제2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3. 9. 1)
 4.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신설 2023. 9. 1)
 5.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3. 9. 1)
- ③ “피조사자” 라 함은 제보 또는 본교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1.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9. 1)
 3.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신설 2023. 9. 1)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
- ④ “예비조사” 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 조사” 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설치 및 운영

제 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 및 본 조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연구지원센터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1)
② 위원장은 연구지원센터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4. 1. 1)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9조 (전문위원) 위원회의 필요한 경우,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0조 (접수) ① 부정행위에 대한 접수는 연구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4. 1. 1)
② 제보자는 연구지원센터에 구술·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한 경우로서 해당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연구부정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 1. 1, 2023. 9. 1)
③ 원칙적으로 제보자는 비밀보장 등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개정 2023. 9. 1)
④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23. 9. 1)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

제11조 (예비조사) ① 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은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관련 증거 자료
5. (삭제 2023. 9. 1)

제12조 (본 조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 조사위원회는 7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3명 이상 위촉한다. (개정 2023. 9. 1)

③ 본 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본 조사위원회 명단

④ 제3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본 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 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 시 총장에게 징계 및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개정 2019.12. 1)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 시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③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파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시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 1)

제14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3일 이내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5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

제 4 장 조사의 원칙

제16조 (절차적 권리 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제17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 9. 1)

④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 9. 1)

⑤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 9. 1)

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

⑦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 9. 1)

⑧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

제18조 (출석 및 자료요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의 유지 등)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조사, 심의, 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0조 (제보자 보호) 위원회는 교내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 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조치사항을 총장에게 건의한다.

제 5 장 기 타

제21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